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8년 5 · 6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 [개정]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4

I.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II. 동적위험관리

III. 요율규제활동

IV. 주요재무제표

V. 영업권과 손상

Global 동향 10

I. 2018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8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20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 - 종업원주식매수 제도와 주식선택권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재무보고를 위한 목적과 개념을 기술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 일관성 있는 회계정책의 개발 및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며 특정 기준서의 요구사항이나 특정 기준서에 우선하지 않는다.

기존 개념체계는 다음의 일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개념체계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개념체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내용의 완전성(fill gaps)

- 필요한 지침이 결여된 부문이 있음 (예 : 재무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지침이 거의 없음)

(2) 업데이트(update)

- 너무 오래되어 유용하지 않은 부문이 있음 (예 : 연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

(3) 명확화(clarify)

- 일부 지침은 명확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음 (예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측정 기준을 결정할 때 측정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개념체계의 각 주제별 변동 사항과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New	
측정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한 측정에 대한 개념
표시와 공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를 포함한 표시와 공시에 대한 개념
제거	자산과 부채의 제거에 대한 지침

Updated	
정의	자산과 부채의 대한 정의
인식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원칙

Clarified			
신중성	수탁책임	측정의 불확실성	실질의 우선

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은 변화가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는데, 수익에 대한 기대는 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전망)에 대한 그들의 평가와 ②기업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미래 순현금흐름 창출능력에 대한 정보와 동등한 위상에서 설명하였다.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표현충실성과 관련하여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현상의 실질이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표현충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측정의 불확실성이 제시되었으며, 중립성과 배치되지 않는 개념으로 신중성을 기술하였다.

3.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주제는 개념체계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고, 재무제표의 목적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①기업에 유입되는 미래 순현금흐름의 예측을 평가할 때 ②기업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의무를 평가할 때, 유용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되거나 작성을 선택한 기업임을 제시하였다.

4.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이번 개정으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명확하게 변경되었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가 변경되었고, 경제적 자원을 정의하면서 기존의 자산, 부채 정의로부터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경제적효익, 통제, 의무, 미이행계약, 수익, 비용, 계약적 권리와 의무의 실질, 회계 단위 등의 구성요소가 제시, 업데이트, 명확화 되었다.

5. 인식 및 제거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항목이 인식되기 위해서 각 항목 관련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그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을 삭제하고 인식시에 고려할 세가지 기준 - ①목적적합성, ②표현충실성, ③원가-효익(원가계약)을 제시하여 정성적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 부채의 제거 시 고려요소 및 계약 변경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6. 측정

개정 개념체계에서 말하는 측정은 현행 개념체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측정기준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개별 측정기준을 현행 개념체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원가-효익, 보강적 질적특성을 제시하였다.

7. 표시와 공시

현재의 개념체계에서는 표시와 공시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 개념체계에서는 표시와 공시에 대한 개념과 손익계산서 또는 기타포괄손익 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8년 4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기준서 등			
사업의 정의	기준서 작성 중	기준서 개정	
공시개선 - 중요성의 정의	기준서 작성 중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토론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분석 중	토론서 발행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주요재무제표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토론서 발행	
할인율	분석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3,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토론서 항목

IASB는 다음의 토론서 항목에 대한 피드백은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프로젝트가 아닌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 ✓ EBIT과 EBITD의 표시
- ✓ 비정상적이거나 빈번하지 않게 발생하는 항목의 표시
- ✓ 성과측정치의 공정한 표시

공시문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서 단위의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IASB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 IASB가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및 작성하는데 이용할 지침을 개발함. IASB는 IASB가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고, 해당 지침이 향후 기준서 제정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식적인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구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림
- ✓ 개발된 지침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준서 1~2개 선정함
- ✓ 상기 선정된 기준서에 지침을 적용하여 지침을 테스트함. 기준서에 지침을 적용하는 목적은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여 이해관계자를 돕고, 주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함임. 기준서 개선의 결과로 공시 요구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침의 적용 목적은 공시 요구사항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임
- ✓ 상기 선정된 기준서와 관련하여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 공개초안의 준비. 공개초안의 결론도출 근거에는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개발한 IASB의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림

II. 동적위험관리

Target Profile

IASB는 이번 회의에서 동적위험관리 모형에서 target profile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IASB는 target profile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asset profile²과 target profile 간의 일관성 및 target profile의 기간(time horizon)에 대해서 논의했다.

- 1 Target profile : 금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 asset profile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의 바람직한 개요(the desired profile)
- 2 Asset profile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모든 기존 금융자산과 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 거래(예 : 미래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될 만기 자산의 재투자)

또한, IASB는 래더링(laddering) 전략³을 비롯하여 target profile과 연관이 있는 여러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모형을 개발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 ✓ Target profile은 주어진 asset profile에 대한 경영진의 (바람직한) 목표를 나타냄
- ✓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Target profile을 결정하여야 함
 -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
 - 핵심예금⁴이 존재하는 경우 핵심예금이 위험관리전략 상 어떻게 고려되는지
- ✓ Asset profile과 target profile의 명목금액은 일치해야 하지만, 기간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 Target profile의 기간은 기업이 금리위험을 관리하려는 기간임

Target Profile : 지정과 자격요건(Designation and Qualifying Criteria)

IASB는 target profile 내 항목의 지정과 문서화 요구사항 및 target profile에 요건 충족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모형을 개발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 ✓ Target profile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목에 대한 자격요건 기준을 수립
- ✓ 포트폴리오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
- ✓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
- ✓ 자발적인 지정 철회 금지
- ✓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정 철회를 요구
- ✓ Target profile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화 요구

핵심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형 내에서 해당 금융부채가 요구불예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 요구불의 특성을 가짐
- ✓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또한, IASB는 핵심요구불예금의 명목금액과 만기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지지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IASB는 금융부채가 요구불예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이자율이 오직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시장 이자율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발행자가 지급되는 이자율을 변경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향후 회의에서 동적위험관리에 이용되는 파생상품 및 효과성 평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 3 래더링(laddering) 전략 : 투자금액을 분산하여 여러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 투자금액 전체를 하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 만기 시 재투자 위험(급격한 이자율의 변동)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래더(ladder)란 각 금융자산의 만기일이 다른 금융자산의 집합을 의미.
 - 4 핵심예금(Core Deposit)이란 기업이 안정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는 예금을 의미

III. 요율규제활동

IASB는 '정의된 요율규제(defined rate regulation)'의 활동에 대하여 개발중인 회계모형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 충분한 특성이 무엇인지와 이에 따른 인식과 측정을 위한 회계모형의 적용범위가 무엇인지
- ✓ 재무제표상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인식기준

IASB는 다음의 사항들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 설정된 '정의된 요율규제'에 회계모형을 적용함
 - 기업과 감독기관 모두에 구속력이 있음
 - 요율규제 메커니즘이 포함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요율 설정 근거를 수립함.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요율에 다른 기간 동안 기업이 수행하는 특정 활동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생성되고 이후 감소되는 조정메커니즘임
- ✓ 회계모형
 - 규제자산과 규제부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존재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계모형에서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에 동일한 인식 기준치(recognition threshold)를 설정해야 함

향후 회의에서, IASB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초안 혹은 토론서를 발표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이 회계모형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V. 주요재무제표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PM)⁵에 대한 요구사항의 명확화

IASB는 다음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a. 모든 기업들은 경영진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성과 이용자에게 전달할 이익 또는 포괄손익의 측정치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여야 함
 - i. 대부분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81A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요구사항⁶에 따라 중간합계 또는 합계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그 측정치를 식별함

5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 : 기업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혹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 : 영업이익, EBIT, EBITDA, 총수익, 총수익조정액 등)

6 IAS1.81A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1) 당기순손익
(2) 총기타포괄손익
(3) 당기순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ii. 때로는 경영진이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81A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 중간합계 또는 합계가 아닌 이를 보완하는 측정치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MPM이 될 수 있음

✓ 다음의 요구사항을 상기 문단 a. ii에서 설명하고 있는 MPM에 적용함

-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에서 MPM 측정치로의 조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측정치는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측정치가 어떻게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경영진의 관점으로 제공한 지표를 다른 기업이 제공한 지표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추가함

경영진이 정의한 조정 주당 순이익(Management-defined adjusted EPS⁷)

IASB는 기업이 MPM을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MPM에 따라 계산되는 '조정된 EPS'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조정된 EPS'의 분자를 계산하기 위해 MPM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조정하지 않아야 함

- "(i) MPM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81A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 "(ii)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즉, "조정된 EPS"의 분자)"과의 차이인 수익의 가산 또는 비용의 차감 내역
- MPM이 세전이거나 비지배지분 차감전인 경우, MPM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81A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의 차이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효과를 반영

(예시)

조정사항		금액
조정항목	구조조정 비용	(300)
	무형자산 상각	(200)
	주식기준보상비용	(450)
차이 조정 합계 ((i)-(ii))		(950)
차이조정된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		96
'조정된 EPS'의 분자금액과 EPS의 분자금액 차이		(854)

7 조정주당순이익(adjusted EPS) : IAS 33에서 정의된 기본주당순이익 혹은 희석주당순이익에서 일부 항목 (예 : 드물게 발생하는 항목 : 구조조정비용 등)이 제외된 조정기본주당순이익 혹은 조정희석주당순이익

✓ 분자의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은 각각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예시)

조정사항		총액	법인세효과	비지배지분	순액
조정항목	구조조정 비용	(300)	32	0	(268)
	무형자산 상각	(200)	0	10	(190)
	주식기준보상비용	(450)	45	9	(396)
‘조정된 EPS’의 분자금액과 EPS의 분자금액 차이		(950)	77	19	(854)

IASB는 재무성과표에 “조정된 EPS”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이 다른 “조정된 EPS”를 공시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MPM를 식별하는 경우 위의 요구사항이 모든 MPM에 적용된다.

V. 영업권과 손상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어떠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도 영업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향후 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서를 발행할 지, 공개초안을 발행할 지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I. 2018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8년 3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IC Current Agenda

2018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진행중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IAS 12]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 : 자산 및 부채의 세무기준액

해석위원회는 IFRS 16 '리스' 또는 IAS 17 '리스'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리스 자산 및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IAS 12 '법인세' 문단 15⁸와 문단 24⁹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기업이 자산의 사후처리비용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해당 질문에서는 리스료와 사후처리 비용이 실제 지급되는 경우 세법상 공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일시적차이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적용 가능한 세법을 고려하여 세법상의 공제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지(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으로 인해 공제)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지(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인해 공제)를 판단¹⁰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세법상의 공제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미래 기간 동안 세법 상 전액 공제될 것이므로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할 것¹¹이다. 또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미래 기간 동안 세법 상 공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 역시 장부금액과 동일할 것¹²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른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세법상의 공제가 부채로부터 발생한다면, 부채의 장부금액은 미래 기간 동안 세법 상 전액 공제될 것이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0'일 것이다. 또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세법 상 공제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세무기준액 역시 '0'일 것이다. 이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른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IAS 12 '법인세' 문단 15와 24를 적용하여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2)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이하 생략)

9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2)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이하 생략)

해석위원회는 IAS 12 '법인세' 문단 15와 24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에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자산과 부채의 순액에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질의 내용 상 동일한 금액의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기 때문에 해당 인식이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IAS 12 '법인세' 문단 15와 24의 예외적용이 적용되며, 이 경우 기업은 이연 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에 대해 해석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원가

해석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손실부담계약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회피 불가능 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기준서 개정을 검토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어떤 형태로 기준서를 개정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IASB에 다음의 내용을 권고 하였다.

-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원가'를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로 특정하는 것을 제시
- ✓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원가의 예시를 제공
- ✓ IAS 37의 해석서나 연간개선이 아닌 좁은 범위의 기준서 개정을 제시

해석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공시 요구사항과 경과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법인세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

해석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IAS 12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확실한 세금 즉, 법인세가 아닌 불확실한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을 받았다.

사실관계

- ✓ 회사는 과세당국과 분쟁상태에 있음
- ✓ 회사는 분쟁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IAS 37에 따른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세당국의 납부 요구에 따라 분쟁금액을 자발적으로 과세당국에 납부함
- ✓ 회사는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를 갖지 않음
- ✓ 분쟁해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음

10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이 회계정책의 선택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11 IAS 12 '법인세' 문단7에 따르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이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이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12 IAS 12 '법인세' 문단8에 따르면,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석위원회는 개정 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에 따라 해당 지급액은 회사에 자산을 발생 시킨다고 보았다. 즉, 해당 지급액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을 창출하며, 그 지급액으로부터 기업에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해당 지급액을 지급할 때, 현금을 받거나 납부할 세금을 결제하는데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 지급액은 자산이고, 가능성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IAS 37에서 정의된 우발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과세당국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해당 자산은 모든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IAS 8의 문단 10과 11¹³을 적용하여 그 자산의 측정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2. IFRS IC Tentative Agenda decisions

2018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AS 7] 현금흐름표 – 단기차입금과 차입약정(credit facilities)의 분류

해석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입금이 IAS 7 문단 8¹⁴을 적용하여 현금흐름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실관계

- ✓ 회사는 단기차입금(short-term loans)과 차입약정(credit facilities)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만기는 단기인 14일임.
- ✓ 단기 차입약정은 회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함
- ✓ 단기 차입약정은 거의 항상 부(negative)의 잔액이며, 부의 금액에서 양(positive)의 금액으로 자주 변동하지 않음

13 IAS 8.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IAS 8.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14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 IAS 7 문단 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차입금은 재무활동이지만,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는 특정상황 즉, 그 은행 계약이 (i)요구에 따라 상환가능하고 (ii)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인 경우에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함
- ✓ 현금관리에는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함(IAS 7 문단 7~9). 은행약정이 기업의 현금 관리의 구성요소인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함
- ✓ 만일 은행약정의 잔액이 부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기업의 현금 관리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자금 조달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임

해석위원회는 질의한 상황에 대해 이러한 약정은 요구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단기 차입약정의 잔액이 부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약정이 기업의 현금관리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자금조달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았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AS 7의 문단 45와 46에서 (a)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하고, (b)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질의한 상황의 단기차입약정이 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이 안건을 기준서 제정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3. IFRS IC Agenda decisions

2018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FRS 9, IAS 1]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IFRS 9 제정 결과로 개정된 IAS 1.82(1)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개정된 IAS 1.82(1)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trading derivative)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의 표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특정 현금흐름(예 : 이자율스왑에서 발생(혹은 실현)되는 현금흐름)을 공정가치 변동과는 별도로 당기손익에 “이자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IFRS 9.Appendix A에서는 유효이자율법과 다른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밀접하게 관계된 용어들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기대 신용손실모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법이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된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측정기법이고, IFRS 9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상각후원가 회계처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유효이자율법과 관련된 정의와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 계산과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한 신용손실의 계산을 포함한 상각후원가 회계처리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만 적용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은 IAS 1.82(1) 밖에 없기 때문에 IAS 1의 다른 표시 요구사항이나 기타 “이자수익”의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AS 1.82(1)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에 추가하여 다른 이자수익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가 기업이 개정된 IAS 1.82(1)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2)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부동산 계약에서 수익 인식

해석위원회는 주거용 단지(예 : 아파트 단지)의 각 호를 고객에게 매각하고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IFRS 15의 문단35¹⁵의 적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여부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 질의자가 제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개발자인 회사는 주거용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각 아파트 단위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하에서 회사는 계약에서 특정하고 있는 완성된 부동산 단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 계약상 동의된 부동산 단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 회사는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단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 고객은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구매가격의 일부분을 지급하며 건설이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구매 가격을 지급한다.
-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재판매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새로운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함)
- 만일 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를 해임하고 다른 회사를 지정하여 주거용 단지의 건설을 완료할 권리가 있다.
-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 하에서 계약이 취소불능하기는 하지만 법원은 고객이 계약을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없는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고객이 실직하거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병에 걸린 경우)에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일도록 판결한 바 있다.
-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 penalty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이 지급불능이라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가 IFRS 15의 진행기준요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FRS 15 문단35(1)의 적용

회사의 수행의무는 즉시 소비할 수 없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건설됨에 따라서 고객이 바로 각 부동산 단위 건설에 의해 제공되는 효익을 얻고 소비할 수 없다. 그러므로 IFRS 15 문단35(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5 IFRS 15.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 제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 IFRS 15 문단35(2)의 적용

- 고객이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재판매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것이며 법적 소유권 없이 부동산 단위 자체를 매각할 수 없다.
- 고객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또는 부동산의 구조적인 디자인 등을 지시할 능력이 없으며,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동산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 건설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통제의 지표가 아니다
- 고객이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고객이 부동산으로부터 나머지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이것이 부동산이 건설됨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현황에 근거하여 고객이 부동산의 각 단위가 건설됨에 따라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IFRS 15 문단35(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IFRS 15 문단35(3)의 적용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특정된 부동산 단위를 완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 계약상 합의된 각 부동산 단위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해석위원회는 계약상 제약이 실질적이며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단위는 회사에 대체 용도가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문단35(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의 평가는 권리의 존재와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나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은 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시된 현황에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보상할 수 없는 계약 취소 위약금에 대한 권리만이 있으므로 문단35(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없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현황에 근거하여 동 이슈는 IFRS15 문단3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단 38에 따라 일정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은 부동산 단위를 매각하는 계약에 따른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또는 일정시점에 인식할지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IFRS 15] 토지의 이전을 포함한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해석위원회는 건물을 건설하게 될 토지와 건물을 판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을 받았다.

✓ 수행의무의 식별

- ✓ 구별된 수행의무의 수익인식 시점(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질의자가 제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회사와 고객은 건물이 건설되기 전에 주거용 단위들을 구성하는 건물의 판매에 대한 취소불능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시점에 회사는 회사가 건물을 건설하게 될 토지의 법적인 권리를 고객에게 이전하며, 법적 권리의 이전은 취소 불가능하다. 계약은 토지의 가액을 특정하고 있으며, 고객은 계약체결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 회사와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해 합의를 하며, 건물이 건설됨에 따라 고객은 약정된 차액을 지불하고 건물의 디자인이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변경이 계획된 승인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개발자는 원가가 비합리적으로 증가하거나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디자인이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고객은 건설 기간 동안 Milestone payment를 지급할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지급이 진행율에 부합되는 금액은 아니다.

✓ 수행의무의 식별

- 해석위원회는 고객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에 이용하거나 또는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건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다른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하게 건물의 건설도 그 자체적으로 또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건설은 IFRS 15 문단27(1)에서 규정하는 '그 재화나 요건이 구별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해석위원회는 토지가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간에는 기능적인 관계가 있지만, 토지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을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위험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고객이 누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던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건물의 건설 서비스는 동일하게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만일 고객이 다른 개발자로부터 건설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토지의 이전이라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 토지와 건물의 건설은 IFRS 15 문단27(2)에서 규정하는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과 그 토지에 건물을 건설해야 하는 두 가지 수행의무가 식별된다고 보았다.



✓ IFRS 15 문단35(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의 적용

-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제공하는 토지는 즉시 소비될 수 없으며, 회사가 수행하여 토지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이전에 대한 수익은 문단 35를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부분적으로 완성한 건물은 즉시 소비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건물이 건설됨에 따라 고객이 건설 서비스로부터 제공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35(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해석위원회는 고객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회사가 전체 하나의 단위의 건물을 건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건설기간 동안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가 건물의 사용을 지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회사가 다른 용도 또는 다른 고객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자산에서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35(2)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관련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은 회사가 제출된 질의에서 제시하고 현황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IFRS 15]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해석위원회는 주거용 복합단지(아파트) 단위 판매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자에게 IFRS 15의 문단 35(c)에서 설명하는 지금까지 수행을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질의자가 제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 회사는 주거용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고객과 각 아파트 단위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계약에서 특정하는 완성된 아파트 단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아파트 단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 ✓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아파트 단위에 대한 구매가격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구매가격은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 ✓ 고객은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회사는 제3자에게 아파트 단위를 재판매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며, 재판매 시 회사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 재판매 가격이 원판매가격(최초 고객과의 계약금액에 재판매를 위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대비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은 계약을 취소한 기존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고객은 아파트 단위를 판매, 사용하거나 개발할 권리가 없으며, 재판매가격이 원판매가격을 초과하는 이익 분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다.

IFRS 15 문단 B9에 따르면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잠재적으로 상실하는 이익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상실하는 손익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만 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FRS 15 문단 35(c)를 충족할 수 없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현황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성격은 재판매가격과 최초구매가격(판매원가포함)의 차이에 대한 권리이며, 재판매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재판매 계약과 관련된 대가로 그것은 기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종료 시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IFRS 15 문단 35(c)에서 설명하는 지금까지 수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IFRS 15 문단 35(c)에 따라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없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수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안건에 추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62〉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 -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주식선택권

종업원주식매수제도 vs 주식선택권

전형적인 종업원주식매수제도(ESPPs : Employee share purchase plans)에서는 종업원에게 기업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약정은 약정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일부 종업원주식매수제도는 옵션의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KPMG의 견해로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지배적인 특성에 따라 주식매수제도가 사실상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인지, 주식선택권(Share options)인지를 결정한다.

선택권(Options)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다. 따라서 종업원은 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부여 받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즉, 종업원주식매수약정에 주식가치 하락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주식매수제도가 아니고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Example 1. 종업원주식매수제도 vs 주식선택권

A사의 종업원은 고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 받았고, 회사와 그러한 논의를 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약정의 지배적인 특성이 옵션 인지는 약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지표가 없다면, 이 약정은 사실상 옵션이며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아닌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주식을 살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권리"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가가 고정된 가격보다 하락한다면, 종업원은 그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므로, 종업원은 주가가 하락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인지 주식선택권인지에 따라 다음 세 가지가 영향을 받으므로 약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부여일의 결정
- ✓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주식의 수량
- ✓ 부여일의 공정가치의 측정

Example 2. 종업원주식매수제도 또는 주식선택권으로의 분류 효과

2018년 1월 1일에 B사는 종업원에게 주식가격의 20%를 할인하여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1,000명의 종업원에게 부여하였고, 그 중 700명이 2018년 2월에 이 약정을 수락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Case 1. 이 약정이 실질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인 경우

부여일은 종업원이 그 약정을 수락한 날 즉, 2018년 2월이다. 따라서 약정을 수락한 700명의 종업원에 근거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Case 2. 이 약정이 실질적으로 주식선택권인 경우

부여일은 종업원이 명백하게 해당 약정을 수락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1월에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는 주식매수권리를 행사한 700명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2018년 1월에 1,000명의 종업원에게 부여된 옵션에 기초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자금대여를 통한 종업원주식매수제도

종업원이 주식의 매수를 위한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대여받는 경우 대여금의 상환조건이 주식매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선택권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기업이 제공한 대여금이나 지급보증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종업원주식매수제도는 실질적으로 주식선택권일 수 있다.

KPMG의 견해로는 자금대여를 통한 주식기준보상이 그 주식에 대한 put option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는 모든 보상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주식가격하락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제도는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여금의 상환으로 옵션이 행사되거나, 옵션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주식매수나 자금대여는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종업원에게 “발행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대여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Example 3. 주식매입약정으로 구성된 주식기준보상

C사는 종업원에게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종업원은 부여 즉시 주식을 매수하였다. 동시에 종업원은 주식매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았다. 대여금의 이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업원은 그 대여금을 매수한 주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회사에 매수한 주식을 주식매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즉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매도하여 상환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 대여금을 매수한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와 매수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팔 권리는 Put option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는 모든 보상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주가가격의 하락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므로 이 주식매수계약이 실질적으로 주식옵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C사는 대여금 지급 시 자기주식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금대여를 통한 주식매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것인지 평가할 때, 종업원에게 대여금 잔액을 모두 회수(full recourse)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KPMG견해로는 기업이 대여금 잔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발행한 주식과 대여금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여금이 “full recourse” 조건인 것이 문서화 되어야 하며, 과거에 기업이 그와 유사한 대여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상환을 면제했다는 증거가 없어야 한다. 다음은 해당 대여금이 full recourse임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 ✓ 해당 대여금이 신용평가사에 다른 상업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됨
- ✓ 기업은 종업원의 대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재무정보를 요청함
- ✓ 기업은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보유함
- ✓ 다른 종업원의 대여금을 모두 회수한 과거 이력이 있음

KPMG의 견해로는 약정이 주식매수제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여금은 주식기준보상과 별도로 회계 처리 되어야 하고,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Example 4. 상환면제가 존재하는 자금대여를 통한 주식매수제도- Non recourse loan

D사는 2018년 1월 1일에 종업원에게 2년의 근무를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종업원의 주식매수자금은 D사가 종업원에게 대여하였다. 종업원은 부여일에 그 대여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부여일에 대여금은 주가가격과 동일한 100이다. 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종업원에게 있지만, 아직 주식은 종업원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며 종업원은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근무용역 제공기간의 종료일에 종업원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 ✓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주식을 이전 받음
- ✓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식의 소유권을 반납함

종업원은 대여금의 원리금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식소유권을 반납할 수 있으므로 주가하락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주식선택권이다.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9로 추정되고 대여금의 이자율이 연5%(단리, 만기 일시 지급, 즉 만기상환금액은 110임)이며, 2년후에 주가가 120어서 종업원이 대여금을 상환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Debit		Credit	
	부여일	자기주식	100	현금
2018년 말	주식보상비용*1	4.5	주식선택권	4.5
2019년 말	주식보상비용*1	4.5	주식선택권	4.5
주식선택권 행사/대여금 상환	주식선택권	9	자본잉여금	9
	현금	110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

*1 주식선택권의 가치 9 / 2년 = 4.5

만일 2년후에 주가가 대여금의 원리금보다 낮은 105여서 종업원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식의 소유권을 회사에 반납한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되고, 인식된 주식보상비용은 조정하지 않는다.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이승훈 S.Manager

T. (02)2112-7874

E. seunghoonlee@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김도형 Manager

T. (02)2112-2733

E. dkim48@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

kpmg.com/kr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